

【 4 】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0. 2. 7.

제출자 : 양주군수

1.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조).
- 나. 위원회는 기존의 규제에 대한 심사와 규제청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중 1인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 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5조).
- 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중 1인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사회·경제·시민단체·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기타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군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획법무담당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건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지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行政規制基本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97. 8. 22 法律第5368號
改正 1998. 2. 28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行政規制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하여 불필요한 行政規制를 廢止하고 비효율적인 行政規制의 新設을 抑制함으로써 社會·經濟活動의 自律과 創意를 촉진하여 國民의 삶의 질을 높이고 國家競爭力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行政規制”(이하 “規制”라 한다)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특정한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으로서 法令등 또는 條例·規則에 規定되는 사항을 말한다.
2. “法令等”이라 함은 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 여전 告示등을 말한다.
3. “既存規制”라 함은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律에 근거하여 規定된 規制와 이 法 施行 후 이 法이 정한 節次에 따라 規定된 規制를 말한다.
4. “行政機關”이라 함은 法令등 또는 條例·規則에 의하여 行政權限을 가지는 機關과 同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을 말한다.
5. “規制影響分析”이라 함은 規制로 인하여 國民의 일상생활과 社會·經濟·行政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預測分析함으로써 規制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規制의 구체적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適用範圍) ①規制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法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舉管理委員會 및 監查院이 행하는 事務

第4編 行政一般 · 第2章 行政作用一般 行政規制基本法

2. 刑事·行刑 및 保安處分에 관한 事務

3. 國家安全保障, 國防, 外交, 統一, 租稅등에 관한 事務중 이 法을 적용하기 곤란한 事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條例·規則에 規定된 規制의 登錄 및 公表,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에 대한 審查, 既存規制의 整備, 規制審查機構의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하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4條 (規制法定主義) ①規制는 法律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用語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規定되어야 한다.

②規制는 法律에 직접 規定하되, 規制의 세부적인 내용은 法律 또는 上位法令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大統領令·總理令·部令 또는 條例·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法令이 專門的·技術的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業務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告示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行政機關은 法律에 근거하지 아니한 規制로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賦課할 수 없다.

第5條 (規制의 원칙)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하고, 規制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本質的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의 生命·保健과 環境등을 보호하기 위한 規制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規制의 대상과 手段은 規制의 目的을 實現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設定되어야 한다.

第6條 (規制의 登錄 및 公表)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規制의 명칭·내용·근거·處理機關등을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改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規制事務目錄을 작성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職權으로 調査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規制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登錄하게 하거나 당해 規制를廢止하는 法令등의 整備計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

'98. 9



경 기 도

별첨 ①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담당관, 실·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기록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여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

제정 1999. 4. 12. 조례 제289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개혁의 활성화 방안
2.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각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실무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인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턱망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인과 도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민간인중에서 민간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 (임기) 민간인 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①위원장은 차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기도규제개혁파위원회조례

②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경제1실무위원회, 경제2실무위원회, 건설·농정실무위원회, 보건·환경실무 위원회, 행정실무위원회등 5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민간인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출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규제사항의 빌굴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
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공표
4. 규제개선실태에 관한 평가 및 홍보
5.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6.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의) ① 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

③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실·국·원·소·본부장 또는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팀)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 팀을 둘 수 있다.

② 행정지원팀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행정규제신고센터) 위원회는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경기도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규제개혁파워원회조례

부 칙 <1994·4·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정 1999. 5. 3. 규칙 제2824호

개정 1999. 9. 20. 규칙 제2853호(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 ①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3분의 2이상을民間인으로 구성한다.

②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도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도의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변호사·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5. 3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6. 기타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도소속 공무원 중 기획관리실장과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1실무위원회 : 외자유치1과장·외자유치2과장·무역진흥과장

〈개정 99. 9. 20〉

2. 경제2실무위원회 : 경제정책과장·공업지원과장·중소기업지원과장

3. 건설·농전실무위원회 : 농업정책과장·지역경제과장·도공과장

4. 보건·환경실무위원회 : 사회복지과장·위생과장·환경정책과장

5. 행정실무위원회 : 법무담당관·문화정책과장·소방행정과장

경기도규제역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개정 99·9·20〉

제3조 (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 ①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1실무위원회 : 경제투자관리실의 외자유치1과 · 외자유치2과 · 무역진흥과에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99·9·20〉
2. 경제2실무위원회 :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제정책과 · 공업지원과 · 중소기업지원과 · 실업대책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99·9·20〉
3. 건설 · 농정실무위원회 : 건설도시정책국 · 농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4. 보건 · 환경실무위원회 : 보건복지국 · 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5. 행정실무위원회 :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국 · 여성정책국 ·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②실무위원회간에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별로 간사가 서로 협의하여 소관사항을 정한다.

제4조 (간사) ①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각 위원회 행정지원팀의 주무담당이 된다.

②조례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심사목록 및 회의록의 작성
2. 2이상의 실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소관의 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회별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6조 (안건의 제출) ①도의 실·국장과 소방재난본부장·직속기관의장·사업소장·출장소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은 후에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9.20>

②실·국장등은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규제정비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9.20>

제7조 (대리출석)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의견의 전술등) ①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국장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지원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에 대한 출입행정지원팀 : 법무담당관실 <개정 99.9.20>
2. 경제1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외자유치1과 <개정 99.9.20>
3. 경제2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 경제정책과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4. 건설·농정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지역정책과
5. 보건·환경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사회복지과
6. 행정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팀: 법무담당관실 <개정 99.9.20>

제10조 (행정지원팀의 기능) ① 각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 의정리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 ② 각 행정지원팀은 소관 실무위원회별로 위원회에 부의할 심의안을 수집하고 검토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며, 심의안과 관련된 실·과가 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99.9.20>
- ③ 각 행정지원팀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회의록등을 작성하여 총괄행정지원팀으로 제출한다.

제11조 (행정규제신고센터) ① 행정규제신고센터는 총괄행정지원팀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기넷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신고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③ 행정규제신고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경기도규제역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부 칙 <1999·5·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 이 규칙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규제역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1. 규제영향의 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규제의 목표설정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국민·기업·단체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경기도규제역파워원회조례시행규칙

□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치의 여부

□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2. 자체심사의견

3. 규제의 존속기한

4. 기타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의견

(각성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경기도규제역파위원회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심사요청서

제 목 :

관계법규의 규정

-
-
-

현행 규제현황

-
-
-

문제점

-
-
-

개선방안 및 정비효과

-
-
-

기타 건의사항

-
-
-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2 호

1998년 11월 2일 (월)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 양주군 자치법규입법예고 제1998-404호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3

도시계획시설

○ 양주군 고시 제1998-107호 도시계획시설(철도등)지적승인고시 5

공고

○ 양주군 공고 - 제1998-403호 도시계획구역 결정 공고 6

책									
람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12 호

자치법규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1998-404호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10월 31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정 :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 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으로 운영하던 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대신하여 조례를 제정해 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안 제2조)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종합경비계획의 수립 시행
- 규제의 등록·공포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됨.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

다. 운영(안 제4조)

- 회의 :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개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
- 회의공개, 의견진술, 위원회 출석 발언등에 관한 사항
- 간사,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수당 지급

라. 조례안 전문 : "별첨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920-2051, 2054)
 - ① 제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양 주 군 보

제 112 호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실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의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양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전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법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양 주 군 보

제 112 호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양주군 공고 제1998-107호

1. 전설교통부 고시 제1998-144호(98. 5. 1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군청(도시과) 및 주내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등) 지적승인조서 : 별첨

1998년 10월 30일

양 주 군 수

의정부도시계획시설(철도등)지적승인조서

가. 철 도

구분	시설명	세 부 시 설 명	위 치			연 장 (m)	면 적 (m ²)	비 고
			기 점	증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철도	일반철도 (본선)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93-3 (의정부시계)	양주군 주내면 산복리 138-1 (구역계)	주내 정거장	1.990	67.410	경원선 복선전철 연장고사
신설	철도	일반철도 (주내정거장)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150-3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348-2	주내역	570	53.670	미도시된 기존정거 장 신설
신설	철도	일반철도 (양주정거장)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198-1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55-1	야주역	500	24.000	정거장 신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 제정

□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조).
- 나. 위원회는 기존의 규제에 대한 심사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안 제2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중 1인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
- 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안 제5조).
- 마.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함(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회의참석수당 : 50,000원 × 8명 × 3회 = 1,200,000원

□ 사전예고결과 : 1998. 11. 2.부터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각 1부
- 군보 제112호(1998. 11. 2)입법예고 공고문